
- 2019년도(2018회계연도) -
지방재정 공통공시(결산)



인천광역시 부평구



목 차

I. 지방재정공시 총괄.....	1
II. 공통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4
2. 결산규모.....	6
2-1 세입결산	
2-2 세출결산	
2-3 기금운영현황	
2-4 지역통합재정통계	
3. 재정여건	13
3-1 재정자립도 [결산]	
3-2 재정자주도 [결산]	
3-3 통합재정수지 [결산]	
4. 부채 / 채무 / 채권	14
4-1 통합부채 현황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4-5 우발부채 현황	
4-6 지자체 채무 현황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4-11 보증채무 현황	
4-12 채권 현황	
5. 주요예산 집행결과	22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 현황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5-9 연말지출 비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6. 지방세 / 세외수입	32
6-1 지방세 징수실적	
6-2 지방세 지출현황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7. 복지 / 민간지원.....	36
7-1 사회복지비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7-6 행사·축제경비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51
8-1 공유재산 및 물품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8-4 지방공기업 현황	
9. 재정성과 / 평가	56
9-1 성과보고서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9-4 재정분석 결과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9-6 성인지 결산현황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9-9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현황	
9-12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실적	
9-14 감사결과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65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10-2 지방채 발행사업	
10-3 민간투자사업	
10-3-1 개별민간투자사업 현황	
11. 별표자료.....	97
별첨 1. 용어해설	
III. 별지자료.....	별도
1.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 '18년도 행사·축제 지출현황	
IV. 특수공시	별도
1.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3.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	
4. 2018 부평풍물대축제	
5.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	
6. 부평 4·5동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	
7.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8. 십정동 소1-2 도로개설	
9. 십정동 479-1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10.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2.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	
13. 부평고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정비	
14. 동암초교 주변 원도심 저층주거지 정비	
15. 백운공원 물놀이장 조성	
16. 어린이 참여놀이터 조성	
17. 십정녹지 조성	
18. 희망공원 조성	
19. 백운공원 조성	
20. 맑은내공원 조성	

2019년 인천광역시부평구 재정공시(결산)

2019.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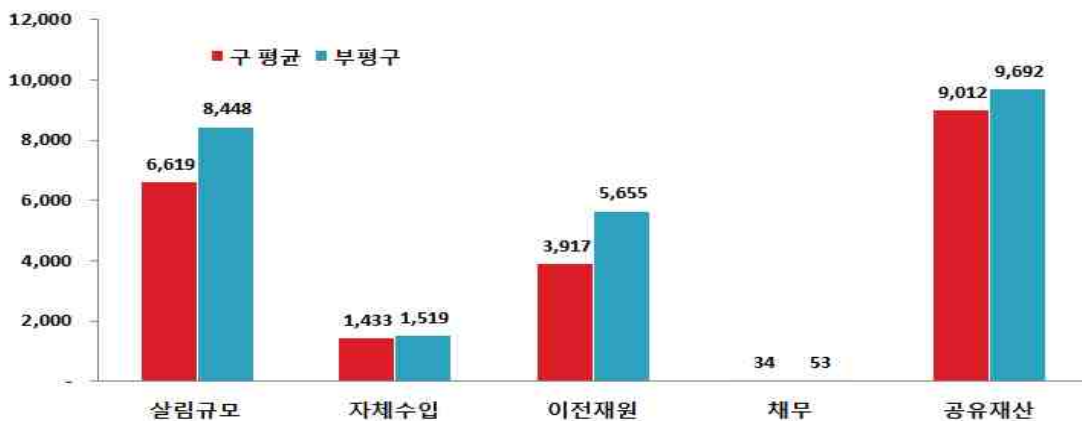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 ◆ 우리 구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48억원으로, 전년대비 6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519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655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69억원입니다.
-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5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0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8년도에 부평2동 청사부지 외 108건 (504억원)을 취득하고,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외 37건(9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9,69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 억원)



- ◆ 우리 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평구 유사단체	[부산(진구, 해운대구, 시하구, 강서구), 대구(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서구, 유성구), 울산(남구, 북구)]
------------	---

◆ 우리 구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619억원) 보다 1,829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433억원)보다 86억원이 더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917억원)보다 1,738억원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4억원)보다 19억원 많고, 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천원)보다 1천원 많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9,012억원)과 비교하여 680억원이 많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총 살림살이 규모는 크지만, 의존재원의 비율이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아 세수 증대를 위한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보조금·교부금 등 지방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평구는 사회복지비가 총 세출예산의 60%를 초과하여, 다른 분야의 재정수요에 차질없이 대처하기 위하여 보다 유연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상담 및 신고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강일만

전화번호 : 032) 509 - 6084

이 메 일 : prozeny@korea.kr

※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행정정보→재정현황→지방재정공시

II.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부평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8,448	7,764	684	6,619	6,032	587
	세출결산 (기금포함)	7,001	6,734	266	5,458	5,001	457
	기금운영현황	245	231	13	183	161	21
③ 재정여건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부채현황	592	591	1	264	247	16
	지방공기업부채	24	9	15	3	1	1
	출자·출연기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채무현황	53	64	△11	34	41	△7
	지방채발행한도액 및 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현황	31	31	0	2	2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현황	0	0	0	0	0	0
	채권현황	47	60	△12	62	52	10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7	28	△1	37	37	0
	자치단체 청사 기준 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918	861	57	733	691	4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9	9	△0	8	8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맞시행경비현황	24	22	2	18	17	1
	연말지출비율	50	72	△22	114	118	△4
금고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917	896	22	955	875	80
	지방세지출현황	375	360	14	411	405	7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323	348	△25	213	213	0

재정운영 결과		부평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 회 복 지 비	4,261	3,836	425	2,932	2,639	29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599	1,479	121	900	798	102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 가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축 제 경 비	19	8	11	17	11	6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9,692	9,282	410	9,012	8,605	407	
	물 품 현 재 액	85	68	17	99	75	24	
	출 자 · 출 연 금 집 행 현 황	59	39	20	11	8	3	
	출 자 · 출 연 기 관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 과 보 고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무 제 표	자 산 총 계	15,013	14,583	430	13,702	13,367	336
		부 채 총 계	592	591	1	264	247	16
		수 익 총 계	7,098	6,362	736	5,294	4,845	449
		비 용 총 계	6,661	6,091	570	4,928	4,480	44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분 석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 사 신 축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 의 계 약 현 황	207	9	197	182	32	14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 수 · 처 리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 속 집 행 실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p>▶ 부평구 유사단체 (참고 : 별표 1 유사지방자치단체 분류)</p>	<p>[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대구(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광주(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서구, 유성구), 울산(남구, 북구)]</p>
---	--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 1년 동안 우리 부평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부평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844,780	791,517	0	27,752	25,510

▶ 결산 총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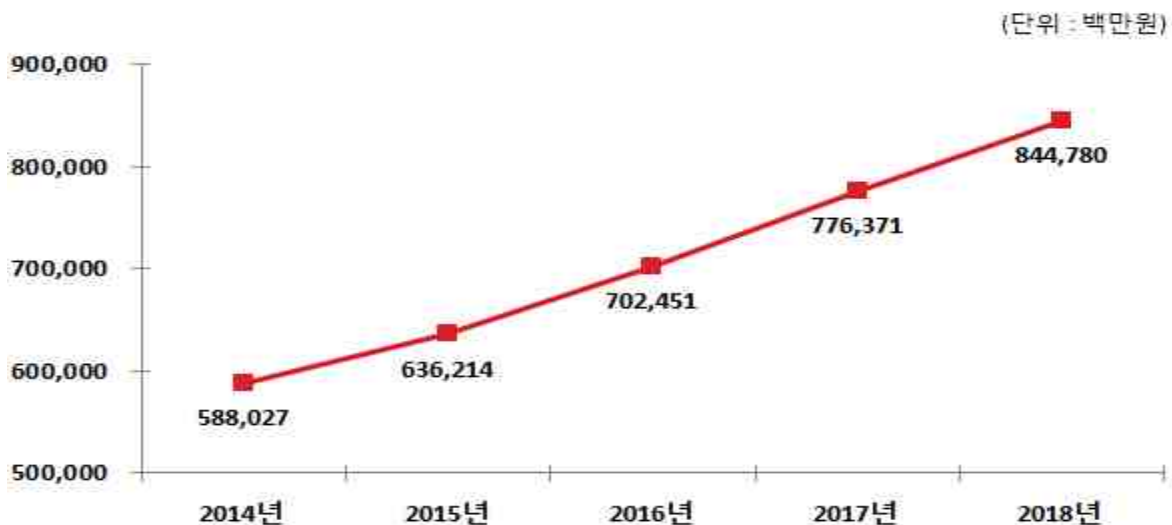
❖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88,027	636,214	702,451	776,371	844,780

▶ 결산 총계기준

☐ 2014~2018년 세입 결산규모는 연평균 9.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대비 68,409백만원(8.8%)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증가 등이 있습니다.



❖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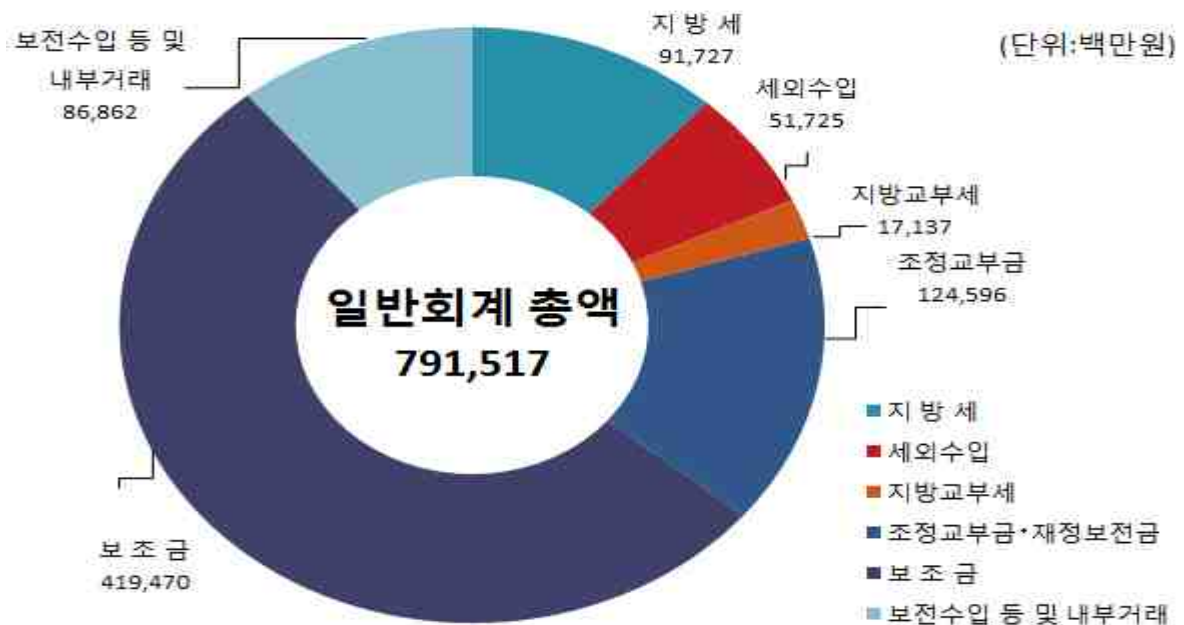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55,740	100	603,080	100	663,939	100	719,428	100	791,517	100
지 방 세	76,748	13.81	82,376	13.66	84,621	12.75	89,560	12.45	91,727	11.59
세 외 수 입	33,620	6.05	36,389	6.03	45,294	6.82	46,061	6.40	51,725	6.53
지 방 교 부 세	7,844	1.41	9,316	1.54	10,245	1.54	11,557	1.61	17,137	2.17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87,795	15.80	92,165	15.28	122,436	18.44	115,378	16.04	124,596	15.74
보 조 금	302,026	54.35	336,399	55.78	352,972	53.16	369,076	51.30	419,470	53.00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7,707	8.58	46,435	7.70	48,372	7.29	87,797	12.20	86,862	10.97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부평구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보조금**으로, 2018년 대비 전년도보다 50,394백만원(13.7%)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의 5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매년 감소하여 2018년에는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이 18.1%, 이전수입(자체재원을 제외한 수입)이 81.9%를 차지하여 전년도 대비 이전재원 비중이 0.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76,748,361	82,376,002	84,620,586	89,559,696	91,727,038
인구수(명)	556,992	555,844	549,716	539,941	524,640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38	148	154	166	175

2-2. 세출결산(기금포함)

☐ 1년 동안 우리 부평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00,056	665,580	0	8,966	25,510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525,791	575,033	598,600	673,411	700,056

▶ 결산 총계기준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출 결산규모는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26,645백만원(4.0%)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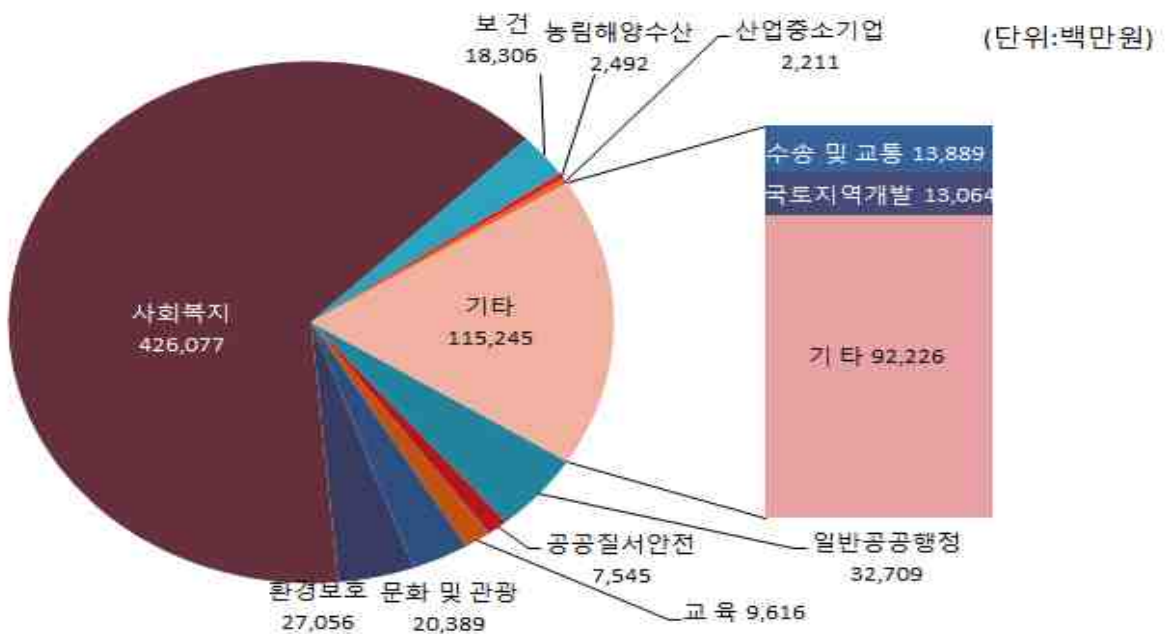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7,755	100	554,779	100	576,179	100	632,603	100	665,580	100		
일반공공행정	40,798	8.04	42,848	7.72	36,668	6.36	47,594	7.52	32,709	4.91		
공공질서·안전	3,578	0.70	3,845	0.69	5,149	0.89	9,114	1.44	7,545	1.13		
교육	10,678	2.10	9,312	1.68	9,927	1.72	11,744	1.86	9,616	1.44		
문화 및 관광	15,434	3.04	18,355	3.31	18,480	3.21	19,533	3.09	20,389	3.06		
환경보호	17,514	3.45	17,931	3.23	22,761	3.95	23,685	3.74	27,056	4.07		
사회복지	306,967	60.46	348,072	62.74	363,617	63.11	383,561	60.63	426,077	64.02		
보건	13,769	2.71	15,665	2.82	16,984	2.95	19,513	3.08	18,306	2.75		
농림해양수산	978	0.19	922	0.17	865	0.15	1,053	0.17	2,492	0.37		
산업·중소기업	827	0.16	1,610	0.29	1,201	0.21	1,561	0.25	2,211	0.33		
수송 및 교통	13,375	2.63	10,845	1.95	11,196	1.94	11,300	1.79	13,889	2.09		
국토·지역개발	11,726	2.31	8,569	1.54	8,791	1.53	16,921	2.67	13,064	1.9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1	0	0	0	0	0		
기타	72,109	14.20	76,806	13.84	80,538	13.98	87,024	13.76	92,226	13.86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부평구의 세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로, 2018년 기준 전체 예산의 64.0%(426,077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는 전년도 대비 예산 비중이 3.4%(42,51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 (2018년, 일반회계)



❖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241	554,778,721	576,178,679	632,602,914	665,579,543
인구수(명)	556,992	555,844	549,716	539,941	524,640
주민 1인당 세출액	912	998	1,048	1,172	1,26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평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3,105	1,345	2,405	1,060	24,450	
노 인 복 지 기 금		1,364	△4	27	31	1,360	2020-12-31
통 합 관 리 기 금		665	13	13	0	678	2020-12-31
성 평 등 기 금		527	111	111	0	639	2022-12-31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330	△27	346	374	1,303	법 정 기 금
자 활 기 금		3,880	366	644	277	4,246	2020-12-31
저 소 득 주 민 자 녀 장 학 기 금		1,014	7	21	14	1,021	2020-12-31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6,348	△62	128	190	6,286	2023-12-31
재 난 관 리 기 금		6,772	881	953	72	7,653	법 정 기 금
식 품 진 흥 기 금		1,205	59	162	103	1,264	법 정 기 금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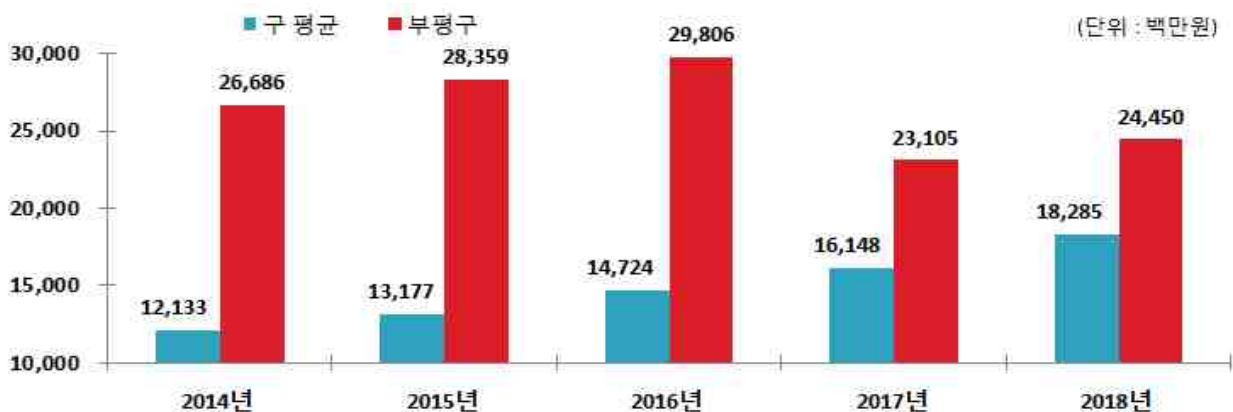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6,686	28,359	29,806	23,105	24,450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8년 기금 총액이 전년도 대비 1,34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전출금(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 증가 등이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 부평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회계/기관수	세입(A)	세출(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D/C,%)
계(=a+b+c-A-B)		847,773	701,755	146,017	1,506,624	62,050	4.12
자치단체(a)		843,831	699,107	144,724	1,501,291	59,217	3.94
지방공공기관(b)	2	30,826	29,533	1,293	5,734	2,833	49.41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26,884	26,884	0	400	0	0

❖ 부평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a+b+c-A-B)	자치단체(a)	공공기관(b)	교육재정(c)	내부거래A(A)	내부거래B(B)
재정규모 활용지표	·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1.11%	9.48%	45.88%	0%	0%
	·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1.71%	52.67%	89.92%	0%	0%
	·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53%	0.28%	6.08%	0%	0%
	·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2%	0.12%	0.17%	0%	0%
	세입결산액	847,773	843,831	30,826	0	26,884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52,595	151,928	15,728	0	15,061
	세출결산액	701,755	699,107	29,533	0	26,884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94,160	80,018	14,143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3,718	1,923	1,795	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856	804	52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 부채/자산	4.12%	3.94%	49.41%	0%	0%
	· 부채/환금자산	29.94%	29.15%	69.26%	0%	0%
	· 차입부채/재정자금	3.10%	3.13%	0.00%	0%	0%
	자산	1,506,624	1,501,291	5,734	0	400
	부채	62,050	59,217	2,833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07,244	203,153	4,091	0	0
	재정자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70,832	169,174	1,658	0	0
차입부채(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5,296	5,296	0	0	0	

-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icbp.go.kr>→재정→재정현황→결산공개→재무제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 2018년도 우리 부평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행정자치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019.10.예정)

3-2. 재정자주도

-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 ❑ 2018년도 우리 부평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행정자치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019.10.예정)

3-3. 통합재정수지

-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 2018년도 부평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행정자치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019.10.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우리 부평구의 통합부채는 행정자치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019.10.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458,257	1,501,291	43,034	
부채(B)	59,104	59,217	113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4.05	3.94	△0.1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¹⁾ 기준

1)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부평구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공사 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1,304	904	400	226%	2,839	2,439	400	609.75%

☐ 우리 부평구는 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을 전액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공단의 부채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결산 기준이 매년 12월 31로, 당해연도 미지급분(직원 퇴직적립금, 4대보험, 12월 카드 미결제분)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데, 이것이 공단의 부채로 인식되어 부채 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해당 부채는 다음해에 모두 지급되는 비용의 일종입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우리 부평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출연 기관	부평구문화재단	10	0	10	0	10	0	10	0

4-5. 우발부채 현황

-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우리 부평구의 우발부채는 행정자치부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019.11.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평구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말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일 반 회 계	6,416	△1,120	0	1,120	5,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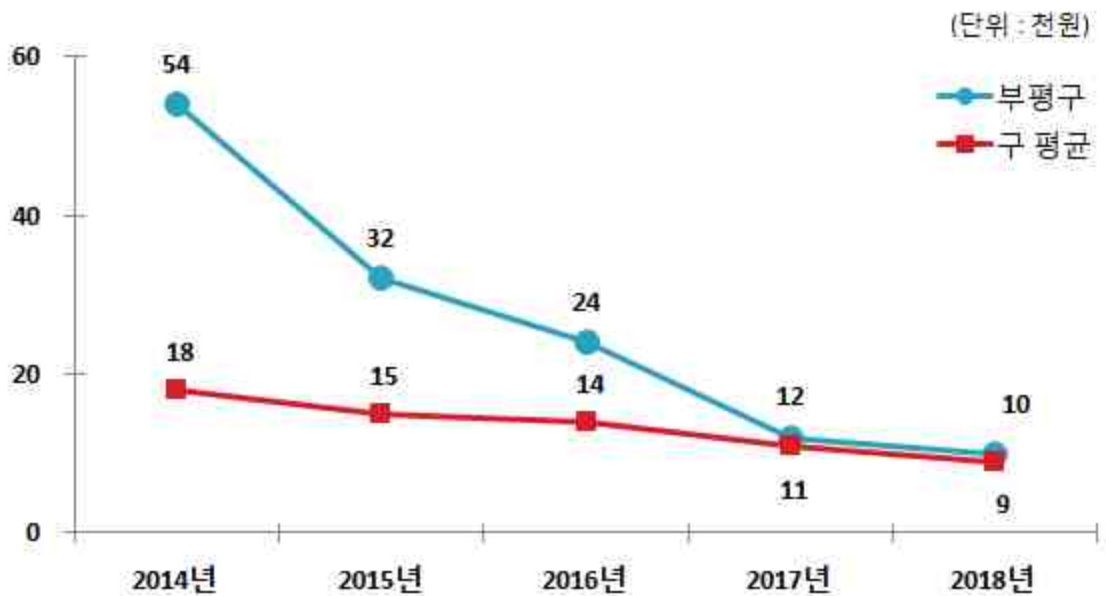
- ☐ 2017년에 기존 상환계획(연 1,120백만원)에 추가로 지방채 원금을 조기상환(5,495백만원)함으로써 총 6,615백만원의 지방채를 상환, 이자부담 경감 및 재정운영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말 기준 5,296백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주민 1인당 채무액은 10천원입니다.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30,175	17,873	13,031	6,416	5,296
인구수	556,992	555,844	549,716	539,941	524,640
주민 1인당채무(천원)	54	32	24	12	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0	2,200	2,900	3,500	4,4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 ☐ 부평구는 2018년 말 기준 일시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평구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140	3,140	0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부평아트센터)	3,140	2009.12.18. ~ 2029.12.17.	3,140	100	1,520	1,520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 이행현황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9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9~'23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해당 지표는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2019.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 ☐ 부평구는 2018년 말 기준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4-12. 채권 현황

- ☐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부평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4,901	△171	200	371	4,731
일 반 회 계	4,072	△1	0	1	4,071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	0	0	0	32
기금회계					
자활기금	798	△170	200	370	628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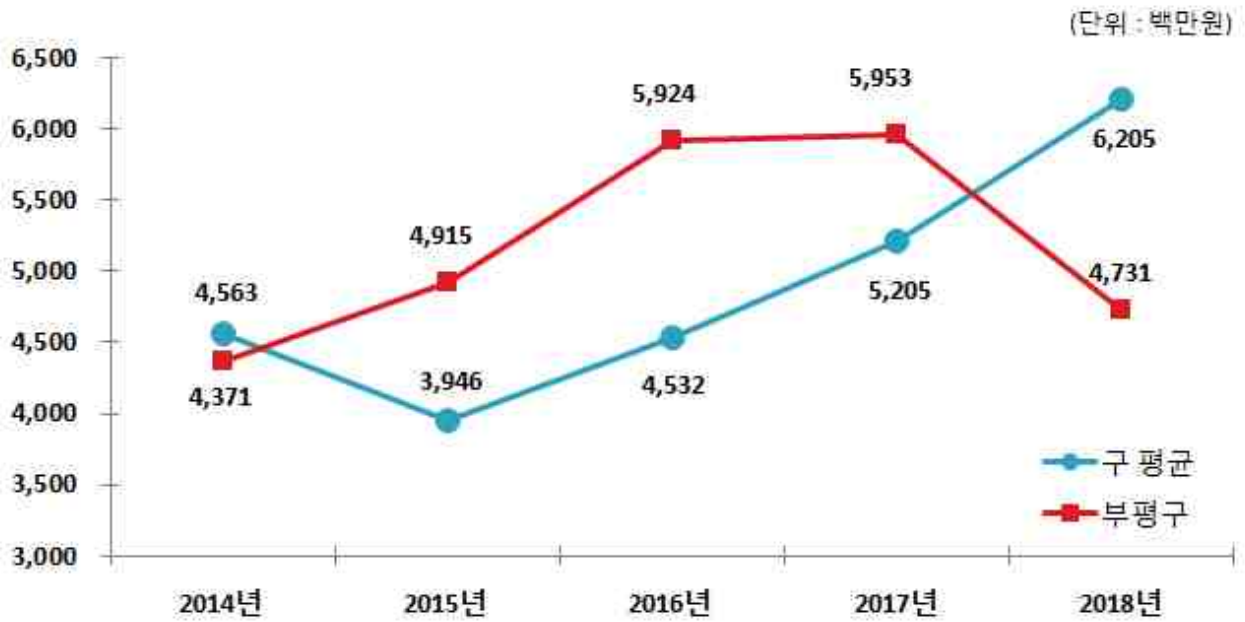
❖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0	4,915	5,924	5,953	4,73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부평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일반회계)(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65,580	2,736	0.41%	
일반운영비	665,580	1,308	0.20%	
여 비		659	0.10%	
업무추진비		551	0.09%	
직무수행경비		126	0.02%	
자산취득비		93	0.0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65,580
기본경비	2,423	2,641	2,627	2,827	2,736
비율	0.48%	0.48%	0.46%	0.45%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우리 부평구는 예산편성때부터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일괄적으로 감편성(평균 10%)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본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기본경비비율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2%(91백만원)의 기본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 우리 부평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41m²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 아닙니다.

(단위 : m², 백만원)

부평구 공공청사 보유 면적	부평구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 반영액
9,389	10,430	△1,041	0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부평구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65,580	91,840	13.80%	
인 건 비	665,580	74,910	11.25%	
직 무 수 행 경 비		2,018	0.30%	
포 상 금		3,238	0.49%	
연 금 부 담 금 등		11,674	1.75%	

-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65,580
인 건 비 (B)	70,594	75,546	79,519	86,142	91,840
인건비비율(B/A)	13.90%	13.62%	13.80%	13.62%	13.80%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부평구의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은 전년도 대비 5,698백만원(6.6%)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서는 정원 확대, 근로자 보수 및 보험금부담금 상승 등이 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부평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65,580	433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65,580	259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4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65,580
업무추진비	418	436	433	441	433
비율	0.08%	0.08%	0.08%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부평구는 지속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대비 절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소폭 절감(8백만원)하여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업무추진비 절감 편성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10	
3.11.~3.18.	공무국외여행 시행에 따른 국외여비(POOL)(강*례)	파리, 벨기에, 독일	1	3	
4.3.~4.12.	2018년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1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14	62	
4.9.~4.18.	2018년도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2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6	70	
4.16.~4.20.	2018. 홍콩·베트남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국외여비	홍콩, 베트남	2	3	
4.23.~5.1.	2017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 유공자 해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2	9	
7.1.~7.7.	2018년 해외박람회 단체참가 파견	베트남	1	1	
6.26.~6.29.	향부숙 과정 참여자 국외연수	일본	1	1	
7.16.~7.20.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실시(여친공원)	일본	6	5	
9.8.~9.14.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실시(시드니 맘에드니)	오스트레일리아	4	6	
9.13.~9.19.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실시(리부평랜드)	네덜란드, 독일	6	9	
10.28.~11.3.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실시(다함께 행복 우분투)	독일	6	12	
10.28.~11.3.	2018년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수행직원 여비 지급	오스트레일리아	4	10	
10.28.~11.3.	2018년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수행직원 국외여비 지급	오스트레일리아	4	10	
11.4.~11.10.	2018년 터키·네덜란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터키, 네덜란드	2	7	
11.7.~11.15.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 공무국외여행	스웨덴, 핀란드	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부평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65,580	914	0.14%	18	50,779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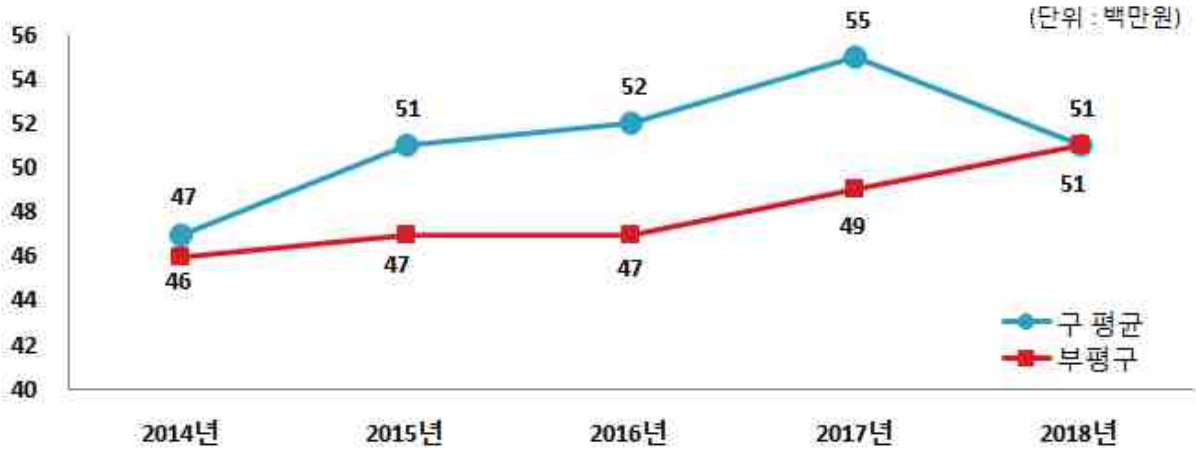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65,580
의회경비	871	902	902	928	914
의원 정수	19	19	19	19	1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6%	0.16%	0.15%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5,858	47,452	47,465	48,863	50,77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하반기 의원 정수 변동(19명→18명)등 제반상황의 변동으로 전년대비 총 의회경비 집행액은 감소하였으나, 1인당 의회경비는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우리 부평구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42	18	2,316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42
10.28.~11.3.	2018년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선진지비교시찰	오스트레일리아	8(4)	21
10.28.~11.3.	2018년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선진지비교시찰	오스트레일리아	8(4)	21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부평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1,616	2,411	1,492	1,290	115.66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65,580
대상인원 (A)(명)	1,439	1,532	1,544	1,530	1,61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1,921	2,127	2,185	2,241	2,41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9.49	93.06	94.85	98.19	115.6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예산편성 기준액(제한도시형)에 맞추어 복지포인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기본복지점수, 가족상황, 근속연수에 따른 변동복지점수를 배정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부평구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29,629	5,027	16.97%
시설비 (401-01)	29,452	4,974	16.89%
감리비 (401-02)	57	21	37.45%
시설부대비 (401-03)	120	32	26.35%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26,829	27,810	23,839	36,937	29,62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530	1,792	8,504	7,237	5,027
비율(B/A)	24.34%	6.45%	35.67%	19.59%	16.9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 2018년 연말지출의 주요 사유로는 부개동 30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5.9억원), 무단횡단금지대 설치(2억원), 부평동 10-1116 토지보상금 지출(1.6억원) 등 총 50억원 (17.0%)의 연말 원인행위가 있었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부평구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신한은행	2015.01.01~ 2018.12.31.	500	125	125	2018.1.30.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20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 ·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문화체육과 (現 문화관광과)	인천부평 풍물대축제	품격높은 문화 예술도시 건설	인천부평 풍물대축제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	600 (125)	592 (125)	8 (0)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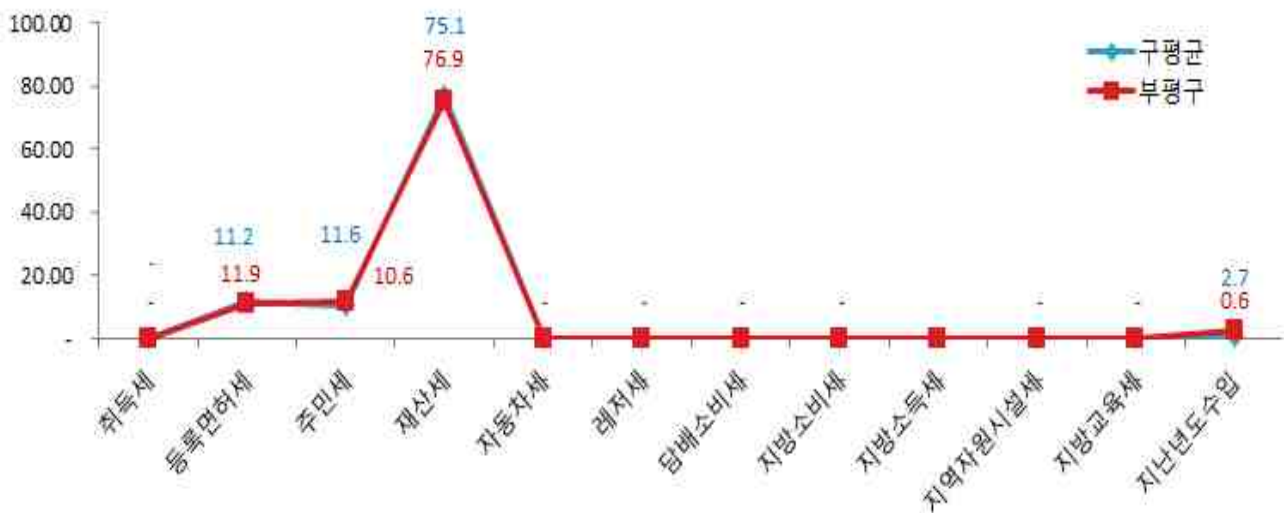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평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91,72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82,376	84,621	89,560	91,727	100	3.65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3,640	11,917	11,509	10,249	11.17	△9.09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968	9,810	10,218	10,613	11.57	5.77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산세	58,035	60,914	65,403	68,878	75.09	5.88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733	1,979	2,429	1,988	2.17	4.68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8) 금액 / 최초연도(ex:2015) 금액) ^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평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 (A)	33,587	37,320	34,658	36,014	37,455
비과세	27,533	29,679	29,294	30,896	32,320
감면	6,054	7,641	5,364	5,118	5,135
지방세 징수액 (B)	76,748	82,376	84,621	89,560	91,727
비과세·감면율 (A/A+B)	30.44%	31.18%	29.06%	28.68%	28.99%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6,014	100%	37,455	100%	1,440	4.00%
일 반 공 공 행 정	20,714	57.52%	21,602	57.68%	888	4.29%
공공질서 및 안전	0	0%	0	0%	0	0%
교 육	793	2.20%	835	2.23%	42	5.35%
문 화 및 관 광	2,033	5.65%	2,127	5.68%	94	4.63%
환 경 보 호	0	0%	0	0%	0	0%
사 회 복 지	1,880	5.22%	1,707	4.56%	△172	△9.17%
보 건	77	0.21%	82	0.22%	5	5.93%
농 립 해 양 수 산	53	0.15%	45	0.12%	△8	△15.12%
산 업 · 중 소 기 업	26	0.07%	32	0.08%	5	19.94%
수 송 및 교 통	13	0.04%	17	0.05%	4	33.8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155	0.43%	181	0.48%	26	16.47%
과 학 기 술	0	0%	0	0%	0	0%
국 가	10,090	28.02%	10,655	28.45%	565	5.60%
외 국	0	0%	0	0%	0	0%
기 타	179	0.50%	170	0.45%	△9	△4.91%

-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제공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7,455	32,320	5,131	4	0	0
보 통 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68	0	68	0	0	0
	주민세	37,202	32,232	4,967	4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84	88	96	0	0	0
목 적 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취득세,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평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4,806	32,344	△2,462
지방세	6,792	6,619	△173
세외수입	28,015	25,725	△2,2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의 주요 체납내역은 재산세로, 총 체납액의 89%(5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 의뢰 및 체납고지서 발송, 다양한 분야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의 주요 체납내역은 미수과태료가 총 체납액의 74%(191억원)이며, 독촉, 납부 독려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40,581	40,372	39,504	34,806	32,344
지방세	6,143	6,832	7,222	6,792	6,619
세외수입	34,438	33,540	32,282	28,015	25,72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2018년 말 기준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징수액은 3,951백만원, 결손액은 3,268백만원으로 2017년말 기준(징수액 4,407백만원, 결손액 3,750백만원)보다 전년대비 징수액 456백만원 감소, 결손액 482백만원으로 결손액 감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부평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계	426,077	70,324	54,341	142,134	132,045	3,142	5,537	18,554	0
국비	266,774	62,758	30,621	70,712	85,098	923	0	16,662	0
시·도비	105,256	4,967	15,248	53,864	25,642	901	3,314	1,320	0
시·군·구비	54,047	2,599	8,472	17,558	21,305	1,318	2,223	57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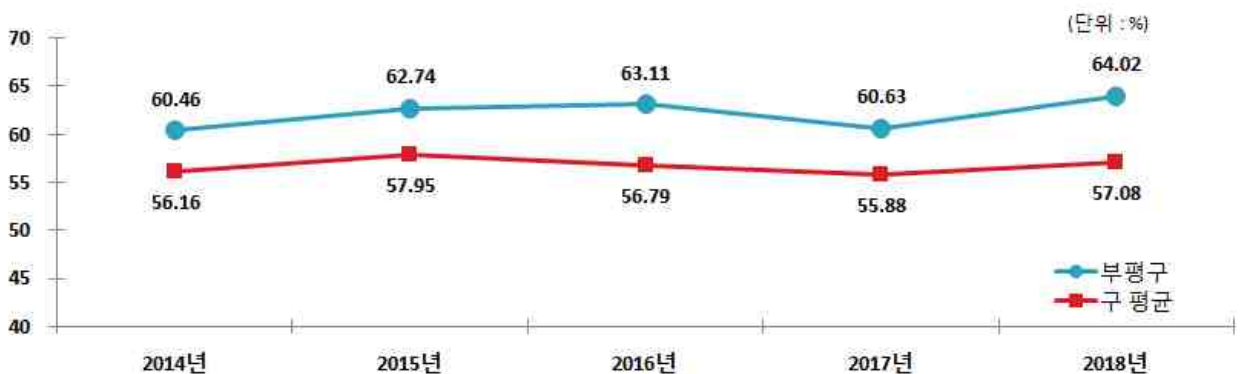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65,580
사회복지분야(B)	306,967	348,072	363,617	383,561	426,077
사회복지분야비율(B/A)	60.46	62.74	63.11	60.63	64.02
인구수(C)	556,992	555,844	549,716	539,941	524,64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51	626	661	710	81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부평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복지 수요층이 인천시에서 가장 많아, 사회복지비 비율이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유사 자치단체 평균보다 복지비 비율이 6.94% 더 높으며, 이는 전년도(4.75%) 대비해서도 더 큰 차이입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평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74,546	159,905	23.71%	
민간경상보조 (307-02)	674,546	3,832	0.57%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852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777	0.1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5,560	3.7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8,471	19.05%	
민간자본보조 (402-01)		413	0.0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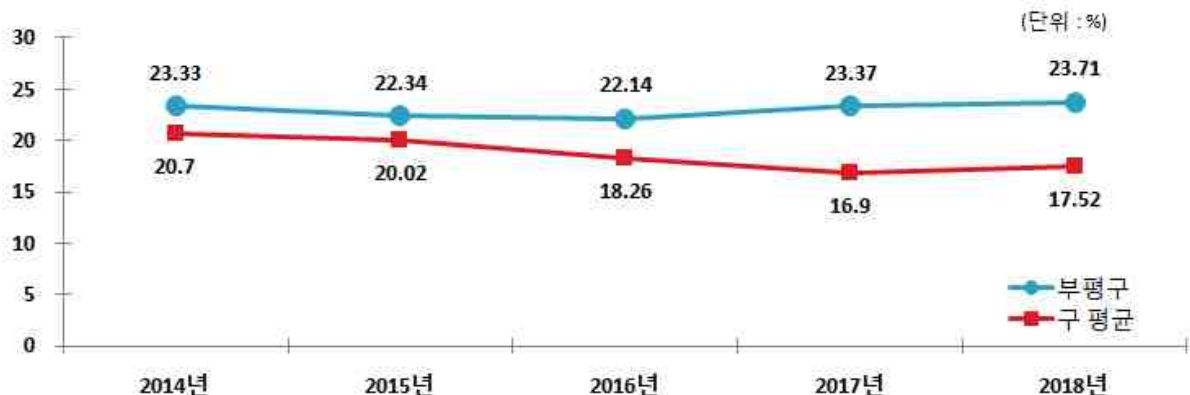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74,545
지방보조금(민간)	118,476	123,911	127,556	147,854	159,905
비율	23.33%	22.34%	22.14%	23.37%	23.7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3,846	3,832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부평구자원봉사센터	68	67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부평구자원봉사센터	16	1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사업	삼산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소	8	8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지원	부평깡시장상인회, 부평종합시장상인회	65	65
경제단체 교류 지원사업	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부평구경영자협의회, 융합교류회 북부지회	25	25
유기질비료지원	부평농협영농자재센터, 남동농협경제사업장, 부천농협	20	20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주)한국농어민신문, (주)농촌여성신문사,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4	4
학생승마체험	인천승마공원, 인천승마장, 인천남동승마클럽	38	3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주)아나나스푸드	103	103
착한가격업소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김현정 헤어샵, 정탁구칼국수, 명가설령탕, 청솔미용실, 미가 헤어포인트, 돈타래삼겹살, 우리이발관, 부부밥상, 부개이 용원, 흥두깨칼국수, 임계동 커피, 레인보우, 화초밥, 기쁨 헤어클럽, 동양이용원, 용궁	3	3
청년취업형현장체험지원사업	자연트레이딩, (주)다원정밀, (주)이피아이티, (주)참길, 아이원테크, (재)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부평구노인 인력개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꿈앤끼, (사)우리동네희망마을	25	25
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367	367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85	85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가온샘외2개소	68	68
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	섬나애드기획외5개소	68	68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한클린외12개소	228	228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구보댄스컴퍼니 외 4	73	73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154	154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더나눔어울림외4개단체	19	13
마을공동체만들기공모사업비	5동7형제 외 34개 단체	132	12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천 보듬지킴이사업	22개동주민센터	44	44
여성친화도시활성화사업	인천여성민우회 외 7개 단체	29	29
청소년 야간 사랑의 밥차(하늘미소) 운영	사단법인 청소년복지단체 하늘목장	9	9
청소년동아리지원	부평청소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외11개소	14	14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미래성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5	5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지원	관내어린이집(379개소)	53	53
찾아가는 부모교육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20	20
어린이집연합회 운동회 지원	부평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5	5
장애인단체사업지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인천부평구지회외1개소	9	9
부평문화원 운영지원	부평문화원	160	160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부평문화원	27	27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598	598
천개의 문화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	락캠프,인천자바르페 리폼맘스,잔치마당	51	51
부평 UP-DOWN STREET 활성화 사업 추진	부평문화원	219	219
전국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일반·유소년)	부평구 체육회	40	40
사회적 약자 생활체육 활동 지원	부평구 체육회	14	14
전국체전(장애인 체전) 등 선수단 지원	부평구 체육회	10	10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평구 체육회	204	204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사업	부평구 체육회	146	146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	꿈땅도서관외11개기관	30	30
평생학습우수동아리 지원	기쁜판떼외16개학습동아리	12	12
성인문해교육사업지원	삼산종합사회복지관	3	3
권역별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	부평기적의도서관 외 6개도서관	22	22
독서문화 확산 지원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외 3개관	12	12
지역서점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도서관본부 (부개도서관)	11	11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맑은내마을)	맑은내주민모임	102	102
주민이 만드는 애인동네 희망지(신촌문화마을)	신촌문화마을 주민협의회	15	15
표본감시 운영경비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김방수내과의원 연세키즈소아과의원 이영재비뇨기과의원 새봄여성병원 마로비뇨기과의원 밝은눈안과의원	7	7
의료기관감시체계운영비지원	인천성모병원,부평세림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38	38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인천성모병원	1	1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월산사회복지시설,마음자리	301	301
복지사각지대 생활필수품 지원	부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	12
저소득층 사랑의 김장나눔	부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2
사랑나누기, 걱정NO 이사서비스 사업	부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10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사업	부평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10
노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부평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10
초등학교 입학 축하 선물 지원	부평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	10
홀몸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십정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	10

❖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행사시기 (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총 계			785	777
제6회인천광역시통·리장한마음대회지원	10월	부평구통장연합회	12	12
제18회 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	10월	(사)서도창배뱅이 연구보존회	22	22
2018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	10월	부평구축제위원회	600	592
구청장기(배)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4월~11월	부평구 체육회	135	135
구청장기(배)대회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자 실비보상	4월~11월	부평구 체육회	2	2
부평구체육회장기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지원	11월	부평구 체육회	4	4
2018년 부평구 자전거 대행진	9월	인천자전거도시 만들기 운동본부	10	1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평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 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합 계	3,865	3,293	612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228	225	67	매우우수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69	69	0	매우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456	456	0	매우우수
통리장 한마음대회 지원	부평구 통장연합회	13	13	0	매우우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5동 7형제	2	2	0	우수
	가치&같이	5	5	0	우수
	갈사모	2	2	0	미흡
	결혼이민자 다색빛공동체	5	5	0	우수
	굴포천사람들주민추진협의회	4	4	0	우수
	꽃마당	2	2	0	우수
	꿈이음소리	5	5	0	보통
	다같이돌자 동네한바퀴	4	4	0	우수
	다울빛이주여성연합회	5	5	0	매우우수
	도란도란교육모임	2	2	0	보통
	마을을사랑하는모임	5	5	0	매우우수
	맘스케익	2	2	0	우수
	미추홀정가원	4	4	0	우수
	배움과소통으로 꿈꾸는마을	5	5	0	우수
	벽과마음을바르는5자매	2	2	0	우수
	별나라천문대	5	5	0	우수
	부개주공5단지(임대)부녀회	2	2	0	우수
	부평공예인회	2	2	0	우수
	부평구문화예술인협회	2	2	0	보통
	부평구새마을부녀회	5	5	0	매우우수
부평구여성단체협의회	2	2	0	우수	
부평무지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	5	5	0	매우우수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사랑넝쿨	5	5	0	매우우수	
	산곡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2	0	보통	
	새마을지도자인천광역시부평구협의회	5	5	0	우수	
	우리동네희망마을	5	5	0	우수	
	우리마을맘스인형극단	5	5	0	매우우수	
	은빛댄스단	2	2	0	매우우수	
	인천여성민우회	4	4	0	매우우수	
	인천자바르페	5	5	0	매우우수	
	장만드는사람들	2	2	0	보통	
	청소년행복지원희망두드림	4	4	0	보통	
	하하작은도서관	5	5	0	매우우수	
	화랑북로 골목축제	10	10	0	매우우수	
	힐링캠프	2	2	0	우수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5	4	1	매우우수
오내친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4	4	0	매우우수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3	0	매우우수	
인천여성회부평구지부		4	3	0	매우우수	
더나눔어울림협의체		4	4	0	매우우수	
어린이극 연극단 '아리아'		7	4	3	매우우수	
인천여성민우회		4	4	0	매우우수	
다올빛이주여성연합회		3	3	1	매우우수	
다문화가족 알리미봉사단 지원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	15	0	매우우수	
아버지학교 운영 지원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7	7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종사자 명절수당 지원	지역아동센터	5	5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지역아동센터	326	320	0	매우우수	
지역아동센터 연합 운동회비 지원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5	5	0	매우우수	
민35세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관내 정부미지원(민간) 어린이집	565	565	0	매우우수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중부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	2	2	0	매우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민들레어린이집 외 31개소	58	39	19	매우우수	
어린이집연합회 운동회 지원	부평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5	5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보조금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지원	부평구 관내어린이집	55	55	0	매우우수
	광복회	16	16	0	매우우수	
	재향군인회	25	25	0	매우우수	
	특수임무 유공자회	16	16	0	매우우수	
	월남전참전자회	23	23	0	매우우수	
	고엽제 전우회	33	33	0	매우우수	

보훈단체 보조금	6.25참전 유공자회	22	22	0	매우우수
	무공수훈자회	23	23	0	매우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19	19	0	매우우수
	전몰군경유족회	19	19	0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24	24	0	매우우수
6.25.참전기념행사	6.25 참전유공자회	8	8	0	매우우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4	64	0	우수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	(사)우리동네희망마을	2	2	0	매우우수
	사회적협동조합 꿈앤끼	1	1	0	매우우수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	2	2	0	매우우수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	4	4	0	매우우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1	1	0	매우우수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1	1	0	매우우수
	아이윌테크	2	2	0	매우우수
	(주)참길	2	2	0	매우우수
	(주)이피아이티	2	2	0	매우우수
	(주)다원정밀	2	2	0	매우우수
	자연트레이딩	2	2	0	매우우수
학생예절 및 한자교실 운영	동아1단지경로당	3	3	0	매우우수
	현대1주구경로당	3	3	0	매우우수
(사)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30	30	0	매우우수
경로당 문화바꾸기 물품구입	부평구 노인복지관	10	10	0	매우우수
	창보아파트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대림아파트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분회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대주파크빌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중부동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한양2단지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산곡푸르지오아파트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한신희아파트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현대2주구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경남4차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현대5차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무지개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대진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경로당(생활집기)기능보강	광명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마장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갈산이안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주공1단지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대동1단지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광명13차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현대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미래타운3단지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광명12차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미래타운5단지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삼산타운1단지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신성미소지움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동원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백영아파트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대동아파트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오성아파트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주공6단지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보람아파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동암 경로당	1	1	0	매우우수
	신동아(후문) 경로당	0	0	0	매우우수
장애인단체 사업지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인천부평구지회	7	5	1	우수
	사)인천농아인협회부평구지회	5	4	1	우수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7	3	4	매우우수
경제단체 교류 지원사업	(사)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17	17	0	우수
	융합회복부지회	6	6	0	우수
	부평구경영자협의회	2	2	0	우수
	용궁	1	1	0	우수
	동양이용원	1	1	0	우수
	기쁨헤어클럽	1	1	0	우수
	화초밥	1	1	0	우수
	레인보우	1	1	0	우수
	임계동커피	1	1	0	우수
	홍두깨칼국수	1	1	0	우수
	부개이용원	1	1	0	우수
	부부밥상	1	1	0	우수
	우리아발관	1	1	0	우수
	착한가격업소 희망장려금 지원				

착한가격업소 희망장려금 지원	돈타래삼겹살	1	1	0	우수
	미가헤어포인트	1	1	0	우수
	청솔미용실	1	1	0	우수
	명가설렁탕	1	1	0	우수
	정탁구칼국수	1	1	0	우수
	김현정헤어샵	1	1	0	우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주)지에스유씨씨티브이	5	3	3	매우우수
	(주)PTS	7	3	4	매우우수
	(주)넥시오	4	2	2	매우우수
	비바코리아	4	2	2	매우우수
	(주)프리티 걸즈	5	2	3	매우우수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주)하온아텍	25	10	15	매우우수
	(주)오디에이테크놀로지	4	3	1	매우우수
	(주)신우테크	4	3	1	매우우수
	(주)성원에프앤씨	3	2	1	매우우수
	(주)쓰리스타	3	2	1	매우우수
	비바코리아	3	2	1	매우우수
	(주)스윙	3	2	1	매우우수
	(주)에스엘라이팅	20	10	10	매우우수
	(주)웰크론헬스케어	3	2	1	매우우수
	(주)디파트라이트	3	2	1	매우미흡
	(주)참길	4	3	1	매우미흡
	(주)지에스유씨씨티브이	2	1	1	매우미흡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인천상공회의소	30	30	0	매우우수
금형개발 지원	(주)샤마스	109	10	99	매우우수
	한국세라프	33	3	30	매우우수
	상광전자	28	3	25	매우우수
	(주)시에스코리아	29	3	27	매우우수
	레드런	30	3	27	매우우수
소형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주)JH에너지	8	5	3	매우우수
	(주)신록태양광에너지	10	5	5	매우우수
	(주)원광에스엔티	2	1	1	매우우수
	중앙에너지(주)	14	7	6	매우우수
	(주)미림에너지	3	1	1	매우우수
자전거 대행진	인천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본부	11	10	1	매우우수
지방문화원사업및운영지원	부평 문화원	189	189	0	매우우수
제18회 부평전국국악경연대회	(사)서도창배뱅이연구보존회	22	22	0	매우우수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	춤추는달팽이도서관	3	3	0	매우우수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띠라	3	3	0	우수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3	3	0	우수	
	꿈땅도서관	3	3	0	매우우수	
전국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59	43	16	매우우수	
사회적약자 생활체육활동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15	13	2	매우우수	
전국체전(장애인 체전) 등 선수단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10	10	0	매우우수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242	135	107	매우우수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행사 지원 수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3	3	0	매우우수	
부평구체육회장기 유소년클럽 축대회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7	4	3	매우우수	
부평구(통합)체육회 운영비 지원(인건비)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34	34	0	매우우수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지원사업	부평구(통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회	16	16	0	매우우수
	꿈땅도서관	3	3	0	매우우수	
	인천평화의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	2	1	매우우수	
	인천YW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3	3	1	매우우수	
	인천부평사랑회 지역아동센터	2	2	0	매우우수	
	우리들의 집	3	3	0	매우우수	
	에덴마을지역아동센터	2	2	0	매우우수	
	서로사랑 지역아동센터	4	3	1	우수	
	생명샘 지역아동센터	3	3	0	매우우수	
	사회적협동조합 꿈앤끼	3	2	1	매우우수	
	북구도서관	3	3	0	우수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	0	매우우수	
	여럿이함께하는 동네야놀자	2	2	0	우수	
	평생학습우수동아리지원사업	천둥	1	1	0	우수
		찾아가는 이야기꾼 동심	1	1	0	우수
		참살이문학	1	1	0	우수
전래놀이연구소 엄지척		1	1	0	우수	
인천통기타마을		1	1	0	매우우수	
우케랑		1	1	0	우수	
완보완심		1	1	0	우수	
열우물하모니카		0	0	0	우수	
슈가엔솔트타로		1	1	0	우수	
소리와 빛깔		1	1	0	매우우수	
부평동화읽는어른모임		1	1	0	매우우수	
보드로		1	1	0	우수	

평생 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미야기	1	1	0	매우우수
	로맨티카아코디언	1	1	0	우수
	나눔프로젝트	1	1	0	매우우수
	꽃보자드로잉	1	1	0	매우우수
	기쁜판테	1	1	0	우수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사업	부평기적의도서관	3	3	0	매우우수
	부개어린이도서관	3	3	0	매우우수
	청개구리어린이도서관	3	3	0	우수
	청천도서관	3	3	0	매우우수
	삼산도서관	3	3	0	매우우수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3	3	0	매우우수
	춤추는달팽이도서관	3	3	0	매우우수
청소년 야간 사랑의 밥차 (하늘미소) 운영	(사)청소년복지단체 하늘목장	10	9	1	매우우수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뉴서울산곡1차아파트	12	6	6	매우우수
	대원빌라(101~102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103~104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105~106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107~108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201~202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203~204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205~206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207~208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209동)	5	4	0	매우우수
	대원빌라(210동)	5	4	0	매우우수
	동산아파트	5	4	0	매우우수
	동수하이빌	5	4	0	매우우수
	드림빌라 1동	10	7	3	매우우수
	드림빌라 2동	10	7	3	매우우수
	드림빌라 3동	10	7	3	매우우수
	미주아파트	5	4	2	매우우수
	보우하트빌 13동	6	4	2	매우우수
	부개백조아파트 마동	12	6	6	매우우수
	부평일동대우아파트	20	10	10	매우우수
	부흥아파트 B,C동	5	4	0	매우우수
삼리아파트	4	3	0	매우우수	
삼익파크1차 15동	5	4	0	매우우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도빌라 10동	5	4	0	매우우수
	수도빌라 11동	5	4	0	매우우수
	영빌라	8	6	2	매우우수
	제일아파트 2동	7	4	0	매우우수
	중앙아파트	7	7	3	매우우수
	남성빌라	8	5	2	매우우수
	보우하트빌 15동	5	4	0	매우우수
	삼미주택	3	3	0	매우우수
	장미연립	10	7	3	매우우수
	인우아파트	5	4	0	매우우수
	천일아파트	4	4	2	매우우수
	청천무지개아파트	33	13	20	매우우수
	미림빌라 라동	24	4	0	매우우수
	일우과인힐	4	4	0	매우우수
	원성빌라	5	5	1	매우우수
	효마을타운	7	5	2	매우우수
	동아연립주택 A, B동	8	5	2	매우우수
	대림하이츠 303동	3	2	0	매우우수
	대림하이츠 301동	1	1	0	매우우수
	성보빌라	5	4	0	매우우수
	동방빌라 3동	5	4	1	매우우수
	동방빌라 1동	5	5	1	매우우수
	삼산벽산블루밍아파트	10	7	3	매우우수
	부평두산위브아파트	25	10	15	매우우수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 부평구는 2018년 말 기준 해당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평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그린파킹사업	강*정 외 2인	21.5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위반 (주차장 유지의무 5년 위반)	'18.3~9.	보조금 반환명령 (9)
주거급여사업	이*배 외 3인	9	보장비용 징수(부정수급)	'18.5~12	보조금 환수명령(2)

7-6. 행사·축제경비

- ☐ 다음은 우리 부평구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65,580	1,909	0.29%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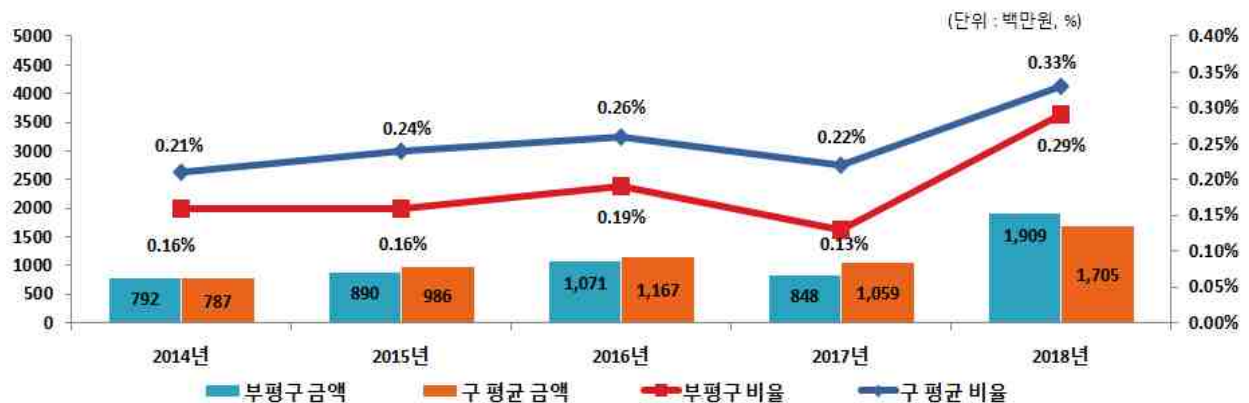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507,755	554,779	576,179	632,603	665,580
행사·축제경비	792	890	1,071	848	1,909
비율	0.16%	0.16%	0.19%	0.13%	0.29%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 2018회계연도부터 경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포함됨에 따라 전년대비 비율이 대폭 상승 하였으나,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경비비율을 보여, 적은 예산투입에 비해 부평구의 행사·축제경비 집행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평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88,211	928,162	109	50,404	38	9,358	188,282	969,208	
토 지	2,585	693,817	82	25,419	38	9,358	2,629	709,878	
건 물	149	177,066	9	21,452	0	0	158	198,518	
입 목 축	178,320	28,746	0	0	0	0	178,320	28,746	
공 작 물	1,932	23,621	18	3,533	0	0	1,950	27,154	
기 계 기 구	21	2,376	0	0	0	0	21	2,376	
선 박	0	0	0	0	0	0	0	0	
항 공 기	0	0	0	0	0	0	0	0	
무 체 재 산	5,202	2,136	0	0	0	0	5,202	2,136	
유 가 증 권	2	400	0	0	0	0	2	400	
용 익 물 권	0	0	0	0	0	0	0	0	
회 원 권	0	0	0	0	0	0	0	0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18년 말 부평구가 보유한 공유재산은 전년도(928,162백만원) 대비 41,046백만원(4.4%) 증가한 969,20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토지(부평2동 청사 공공용지 취득), 건물(노인문화센터, 영성마을회관 등), 공작물(현수막 지정게시대, 우수지목제테크 등)이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834	6,813	205	2,155	49	497	990	8,471	
구 매	827	6,768	96	833	14	38	909	7,563	
관리전환	7	45	23	755	1	12	29	788	
양 여	0	0	1	9	2	210	△1	△200	
기 타	0	0	85	558	32	237	53	321	

▶ '18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852,346	851,884	864,334	928,162	969,208
물 품	5,938	6,212	6,539	6,813	8,47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 2018년에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 사전절차 진행, 노인문화센터 신축 및 영성마을회관 건축 등으로 이에따른 공공용지 및 건축물 신규취득 및 물품구입이 전년대비 상승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평구의 2018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00,056	0	0%	5,905	0.84%	
일반 회 계	665,580	0	0%	5,905	0.89%	
특별 회 계	8,966	0	0%	0	0%	
기 금	25,510	0	0%	0	0%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525,791	575,033	598,600	673,411	700,05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400	400	400	400	40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1	3,415	2,717	3,908	5,905
출연금 비율 (D/A)	0%	0.59%	0.45%	0.58%	0.84%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연금 집행현황



- 전년대비 출연금 집행 현황이 대폭(1,99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던 도서관 사업운영비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전환하며 증가한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은 없었습니다.

❖ 2018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합 계	5,905			
	일반회계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2,957	1.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20조 2. 「지방재정법」 제18조 3.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설립 및운영조례」 제4조,제19조	2018년 부평구 문화재단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13	1.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설치·운영) 2.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적립및용도등)	2018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지출
		(재)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2,932	1.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관한법률」 제20조 2. 「지방재정법」 제18조 3.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설립 및운영조례」 제4조,제19조	2018년 부평구립 도서관 사업운영비 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3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력증진을위한사항) 2. 「인천광역시부평구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2018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을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연금	자산	부채	
출연 기관	부평구문화재단	52	0	10	0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출자기관이란?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부평구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공 단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242	2,839	2,439	17,527	17,527	0	다

❖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²⁾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단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 우리 부평구는 공단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그 수익 및 비용을 전액 자치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공단의 당기순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9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평구는 본 회계연도의 '참여와 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1개)-정책사업목표(67개)-단위사업(19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 부평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1	67	199	45	102	52	669,255	636,363	32,892
의회사무국	1	1	4	1	2	1	1,252	1,351	△99
비전기획단	1	1	2	0	1	1	796	1,068	△272
기획조정실	1	1	3	0	2	1	11,385	23,856	△12,470
감 사 관	1	1	4	2	1	1	160	166	△6
홍보담당관	1	1	3	0	2	1	2,225	2,849	△624
자치행정국	1	9	30	4	19	7	98,320	96,408	1,912
경제복지국	1	17	53	4	32	17	409,602	368,225	41,377
문화환경국	1	22	55	19	22	14	77,883	75,586	2,297
도시관리국	1	10	32	11	14	7	48,665	46,717	1,948
보 건 소	1	3	11	3	6	2	18,525	19,746	△1,221
청천보건지소	1	1	2	1	1	0	442	392	50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대상(기금제외, 동주민센터 제외)
-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재정→재정현황→결산공개)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458,257	1,501,291	43,033	1,370,216
부채 총계	59,104	59,217	114	26,364
비용 총계	609,065	666,101	57,037	492,763
수익 총계	636,244	709,801	73,557	529,429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부평구청 <http://www.icbp.go.kr>→재정→재정현황→결산공개→재무보고서)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평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8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19.2.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할 예정입니다.(‘19.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우리 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평구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73,243	151,977	87.7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83,000	82,097	98.9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1,832	68,578	83.8
자치단체 특화사업	8,410	1,302	15.48

-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부평구청 : <http://www.icbp.go.kr>→재정→재정현황→결산공개→성인지결산서)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부평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18년(A)	22	1,328,316	11	1,275,998	1,249,993	11	52,318	49,148
2017년(B)	18	1,044,995	13	1,018,949	839,091	5	26,046	26,046
증감(A-B)	4	283,321	△2	257,049	410,902	6	26,272	23,103

-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원가회계정보 및 연도별 비교표 (별지 2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2018년 부평구에서는 청사신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 우리 부평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³⁾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52	34,919	544	20,652	83.44%	59.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적	건수	29	28	21	55	544
	금액	1,404	1,758	1,645	907	20,652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3)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자치단체명	시설유형	시설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면적(m ²)	토지면적(m ²)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회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10.10.17	4,987	2,991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09.12.17	17,236	13,386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 연이인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
				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장부 가액	내 용 수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	위탁	22	87,407	13,155	245	1,963	11,192	40	1,106	164	△942
부평 아트센터	위탁	52	150,399	45,424	1,224	7,568	37,856	40	3,856	396	'△3,460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 중	
7	6	0	1	7	2	3	2	7	7	0	0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부평구는 광역시·도에 해당하지 않아 교부실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5%(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18,248	121,133	109,411	50.1%	90.1%

9-14. 감사결과

- 우리 부평구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부평구는 감사지적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 우리 부평구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청천1동 청농7길 도로 개설	2,919	2,660	232	27	0	2018	2008	100%
부개서초교인근경인철도 횡단지하차도설치	7,500	6,594	24	19	863	2020	2010	28%
영성마을저층주거지관리사업건립	5,500	3,613	1,482	0	0	2018	2013 (시심사)	100%
부평고교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3,515	940	172	1,863	0	2019	2013 (시심사)	85%
동암초교주변 저층주거지관리사업	4,085	1,347	169	2,569	0	2019	2013 (시심사)	65%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5,035	4,470	565	0	0	2018	2014 (시심사)	100%
십정1동 열우물1길소1-2호 선 도로개설공사	4,100	59	2,684	1,357	0	2019	2014	85%
부평구새뜰마을사업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4,500	1,839	309	2,661	0	2019	2015 (시심사)	75%
인천광역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3,315	1,425	607.5	607.5	675	2020	2018	60%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	8,708	340	1,712	3,298	3,358	2020	2016 (시심사)	55%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8,600	1,000	4,000	1,000	42,600	2022	2017 (중앙심사)	20%
부평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15,000	500	1,166	1,130	12,204	2022	2017 (중앙심사)	20%
혁신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9,800	0	0	0	9,800	2022	2017 (중앙심사)	10%
부평4동 주민센터 신축	12,100	0	0	500	11,600	2021	2017 (시심사)	20%
부평2동신축청사등 공영주차장 복합건설	2,000	0	0	500	1,500	2020	2017	30%
십정동 181-233번지 도로개설	2,500	0	22	0	2,478	2021	2018	5%
부평3동 767-1번지 도로개설	3,000	0	0	18	2,982	2021	2018	5%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	4,000	0	0	400	3,600	2021	2018	5%
십정동 소2-5호선 도로개설	4,000	0	0	0	4,000	2021	2018	5%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
		기투자	2018년 집행사업비	2019년	2020년 이후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4,444	0	80	2,897	1,467	2021	2018	25%
희망공원(2단계) 조성	6,500	0	1,150	3,000	2,350	2021	2018 (시심사)	10%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	4,000	0	0	4,000	0	2020	2018	47.5%
맑은내공원 조성	19,500	0	1,000	1,500	17,000	2022	2018	45%
부평2동 760-311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4,000	0	0	45	3,955	2020	2018	5%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	2,600	0	0	81	2,519	2020	2018	5%
부평남부체육센터 신축	36,500	0	0	5,500	31,000	2022	2018 (중앙심사)	1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회,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청천1동 청농7길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마승환(☎509-6793)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천동 청천농장 접근 도로인 청농7길은 현재 시점과 종점이 기 개설되었으나 중간부(L=210m) 미 개설로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천농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평천로의 교통량 분산 및 우회를 통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필요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4. ~ 2018. 6.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세월천로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210m, B=12m(중3-10호선)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19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도	2020년 이후
계	2,919	2,660	232	27	-
시 도 비	1,100	1002	87	10	-
시군구비	500	456	40	5	-
교 부 금	700	638	56	6	-
교 부 세	619	564	49	6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0. 6.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10. : 보상(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협의·취득
- 토지9필지/35필지 , 지장물 3동/14동
- 2014.12.~2016.6. : 사업비 확보(2,100백만 원)
- 2017. 2. : 공사 착공
- 2018. 6. :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해당 없음

사업명	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진호(☎509-679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인철도횡단 지하보차도 설치로 부개1동~부개2동지역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공사가 필요함.

사업개요

- 기 간 : 2009. ~ 2020. 03. 28.
- 위 치 : 인천 부평구 부개동 291-1 일원
- 규 모 : 지하보차도 신설 L= 66(m), B= 10(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50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도	2020년 이후
계	7,500	6,594	24	19	863
시 도 비	2,500	2,198	8	6	288
시군구비	250	220	-	1	29
교 부 금	1,750	1,538	6	5	201
교 부 세	1,000	880	3	2	115
민간자본	2,000	1,758	7	5	23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0. 6. : 실시설계 착수
- 2014. 4.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4. 4. : 위·수탁 협약서 체결(구 ↔ 한국철도공사)
- 2014. 9. : 공사 착공
- 2015. 4. : 공사 관련 집단민원(소음 및 진동 등)
- 2015. 10. : 갈등영향분석 용역착수 및 갈등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6. 9. : 조정갈등 합의 완료
- 2017. 1. : 합의사항 설계변경(반영) 및 사업 재착수
- 2017. 11. : 공사계약 해지(타절)
- 2018. 1.~ : 설계도서(재입찰) 협의, 설계심사·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18. 6.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철도공단)
- 2018.12. : 공사 재착공

향후계획

- 2020.03. : 공사 준공

사업명	영성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담당자	주거환경정책과(現도시개발과) 성진협(☎509-690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사람중심·장소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공동체의 회복 토대 마련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8년
- 위 치 : 부평구 영성서로 15-13 일원
- 규 모 : 9,670m²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5,500	3,613	1,482	-	-
시 도 비	4,950	3,252	1,334	-	-
시군구비	550	361	148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8. 4월 준공 이후 주민공동시설 유지·관리(자치행정과) 중

향후계획

- 주민공동시설 등 유지·관리
 - * 2019. 7월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정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부평고교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담당자	주거환경정책과(現도시개발과) 조정희(☎509-692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 정착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9년
- 위 치 : 부평동12-80번지 일원
- 규 모 : 22,443m²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515	940	712	1,863	-
시군구비	351.5	106		245.5	-
기 타	3,163.5	834	712	1,617.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2016. 4.1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2018. 6.20.: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018. 9.12.: 주민체력단련시설 조성공사 준공
- 2018.12. 7.: CCTV 설치공사 준공
- 2019. 5. 1.: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준공

향후계획

- 2019. 7.: 도로 정비공사 착공
- 2019.12.: 정비사업 완료

사업명	동암초교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담당자	주거환경정책과(現도시개발과) 선각규(☎509-6923)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통한 마을공동체 문화 정착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9년
- 위 치 : 십정동 479-19번지 일원
- 규 모 : 13,690m²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8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085	1,347	169	2,569	
국 비	956	313	131	512	-
시군구비	408.5	66	-	342.5	-
기 타	2,720.5	968	38	1,714.5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5%)

- 2016. 4.1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 2018. 6. 7.: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018.11.15.: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착공
- 2018.12. 7.: CCTV 설치공사 준공

향후계획

- 2019. 9.: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준공
- 2019.10.: 도록 정비공사 착공
- 2019.12.: 정비사업 완료

사업명	산곡·청천지역 노인문화센터 건립	담당자	노인장애인과 임관혁(2509-6352)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평구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기 간 : 2013년 ~ 2017년
- 위 치 :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253번길 34(산곡동)
- 규 모 : 대지면적 681㎡, 연면적 1,858.93㎡(지하2층, 지상5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6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5,035	4,470	565	-	-
시 도 비	2,517.5	2,235	282.5	-	-
시군구비	2,517.5	2,235	282.5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3. 12. : 시유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
- 2015. 05. : 설계 공모
- 2015. 07. : 당선작 선정 및 설계용역 발주
- 2016. 03. :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발주
- 2016. 05. : 공사 기공식 개최 및 착공
- 2017. 11. : 공사 준공
- 2018. 02. : 산곡노인문화센터 개관

□ 사업변경 내역

구분	당초	현재
도시계획	· 준공업지역 · 건폐율 70%, 용적율 4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폐율 49.57%, 용적율 168.71%
건립규모	· 연면적: 2,300㎡내외 - 지하 1층, 지상 4층	· 연면적 : 1,858.93㎡ 내외 - 지하 2층, 지상 5층
총사업비	· 6,324백만원	· 6,062백만원

사업명	십정1동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마승환(☎509-6793)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로개설공사 시행구간은 열우물테니스 경기장과 연결된 도로로써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06. 7월 GB해제에 따른 입주민 증가로 상습교통정체와 안전사고 발생 등 주민 불편이 많아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구간임.

사업개요

- 기 간 : 2016. 9. ~ 2019. 12.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97-1번지 일원(합봉로 46번길)
- 규 모 : 도로개설 (L= 418m, B= 10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100백만 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도	2020년 이후
계	4,100	59	2,684	1,357	-
시 도 비	1,050	15	687	348	-
시군구비	1,650	24	1080	546	-
교 부 금	1,000	14	655	331	-
교 부 세	400	6	262	132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2014. 5. : 인천시 부평구 투융자심사 완료
- 2016. 10.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7. 6.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8. 1.~ : 보상(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협의·취득
- 2019. 2. : 수용재결신청
- 2019. 3. : 도로개설공사 계약의뢰
- 2019. 4. : 공사 착공

향후계획

- 2019. 12. : 공사 준공

사업명	부평구 새뜰마을사업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담당자	미래도시과(現도시재생과) 오채은(☎509-5074)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평2동 삼릉 줄사택 지역은 70여년 된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화재 등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고 주거 환경이 열악함
- 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통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함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8(2019년으로 연장 예정)
- 위 치 : 부영로 21-81 (부평동 760-270번지) 일원
- 규 모 : 7,659m²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500	1,839	309	2,661	-
국 비	3,150	1,287	216	1,863	-
시 도 비	200	81	14	117	-
시군구비	1,150	471	79	681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75%)

- 2016. 8월: 마스터플랜 승인(국토부, 지역발전위원회)
- 2016. 11월 ~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23필지 중 22필지)
- 2017. 11월: 빈집철거 및 환경개선사업
- 2018. 12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 및 환경개선사업
- 2019. 5월: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

향후계획

- 2019년: 주민공동이용시설 준공 및 운영
- 2019년: 기타 사업 시행 및 사업 정산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당초) 2015 ~ 2018 → (변경) 2015 ~ 2019

사업명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담당자	문화체육과(現 문화관광과) 이희성(8509-6416)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창의적 재생산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음악을 중심으로 생산·연구·소비기능이 융합된 첨단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를 창출.

사업개요

- 기 간 : 2016년 ~ 2020년
- 위 치 : BP음악산업센터 등 부평구 일원
- 규 모 : BP음악산업센터 외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315	1,425	607.5	607.5	675
국 비	1,326	570	243	243	270
시 도 비	994.5	427.5	182.25	182.25	202.5
시군구비	994.5	427.5	182.25	182.25	202.5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60%)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구성
- 주요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축제, 교육, 감상회, 연구 등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장소 및 공간의 발굴,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향후계획

- 주요 사업의 성과와 전망을 기반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준비 및 신청
- 도시브랜드 및 음악 융합·문화 경제 생태계 구축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 당초 3,750백만원 → 현재 3,315백만원

사업명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담당자	재무과 백정삼(☎509-6223)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 노후화와 사무처리 공간 협소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롭게 행정·복지·문화 등 다양한 편의기능과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월 ~ 2020. 12월
- 위 치 : 부영로 21-28(부평동 760-211) 일원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705.64㎡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70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8,708	340	1,712	3,298	3,358
시군구비	8,708	340	1,712	3,298	3,358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5%)

- 2018. 1. : 건립계획 수립
- 2018. 6. ~ 2019. 5. : 설계용역 및 건축협의 등
- 2019. 6. : 공사(감리) 계약 및 착공

향후계획

- 2020. 12. : 공사 준공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변경
 - 당초 지하1층 연면적 3,200㎡ → 지하2층 공영주차장 반영 연면적 3,700㎡

사업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담당자	미래도시과(現도시재생과) 윤상태(☎509-745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시설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굴포천 상류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2.
- 위 치 :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 부평구청
- 규 모 : 생태하천 복원 L=1.5km(복개 철거 L=1.2k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8,600	1,000	4,000	1,000	42,600
국 비	24,300	0	0	1,000	23,300
시 도 비	12,150	0	1,000	0	11,150
시군구비	12,150	1,000	3,000	0	8,15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17. 4월 :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계획 사전심의
- '17.11월 : 한국환경공단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18.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 3월 :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19. 6월 : 부평구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용역공정율 33%)

향후계획

- 2020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년 : 사업 착공
- 2022년 : 사업 준공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부평동 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담당자	미래도시과(現도시재생과) 윤상태(☎509-745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을 통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2017. ~ 2022.
- 위 치 :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 부평구청
- 규 모 : 하수도 재정비 L=1.5k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5,000	500	1,166	1,130	12,204
국 비	4,500	0	500	430	3,570
시 도 비	5,250	0	583	350	4,317
시군구비	5,250	500	83	350	4,317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17.11월 : 한국환경공단 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18. 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9. 3월 : 사업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
- '19. 6월 : 부평구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용역공정율 33%)

향후계획

- 2020년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년 : 사업 착공
- 2022년 : 사업 준공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해당없음

사업명	혁신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담당자	주차지도과 윤남식(☎509-6727) 박성훈(☎509-6728)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등 주차수요가 급증
- 인근주택가 및 굴포천 복원사업에 따른 주차난 해소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2. 12.
- 위 치 : 부평동 65-17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5,785㎡, 주차면수 300면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9,8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9,800				9,800
시 도 비	4,900				4,900
시군구비	4,900				4,90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9. 1. : 혁신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계획(안)
- 2019. 3. : 공영주차장 건설 위치 변경 요청 (市 교통관리과)

향후계획

- 2019. 9. : 공유재산 심의 요청 (재무과)
- 2020. 3. : 혁신센터 건립 공사 착공
- 2022. 12. : 혁신센터 건립 공사 준공

사업명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담당자	재무과 백정삼(☎509-6223)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자치공간 및 주차시설 부족 등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사업효과 극대화를 마련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와 보건행정 복합공간으로 조성코자 함

사업개요

- 기 간 : 2018. 6월 ~ 2021. 12월
- 위 치 : 주부토로 65(부평동 434-3)
- 규 모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5,100㎡내외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2,100			500	11,600
국 비	1,327			53	1,274
시 도 비	166			7	159
시군구비	10,607			440	10,167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2018. 6. : 건립계획 수립
- 2018. 9. ~ 12. : 설계공모 및 심사
- 2019. 1. ~ 11. : 설계용역 및 건축협의 등

향후계획

- 2019. 12. : 공사(감리) 계약 및 착공
- 2021. 12. : 공사 준공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 공영주차장 건립	담당자	주차지도과 윤남식(☎509-6727) 박성훈(☎509-6728)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불편 민원 발생
- 토지가격 상승 등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 불가능
- ※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 해결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 2020. 12.
- 위 치 : 부평동 760-21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1,288㎡, 주차면수 29면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000			500	1,500
시 도 비	1,000			250	750
시군구비	1,000			250	75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2017. 9. : 부평2동 청사 공영주차장 복합건설계획 수립
- 2018. 5. :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공사 설계 공모 선정
- 2018. 7. : 청사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4.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9. 7. : 공사 착공

향후계획

- 2020. 12. : 공사 준공

사업명	십정동 181-233번지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진호(☎509-679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량 증가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여건 향상을 위하여 기존 중로 2-79호선 확폭이 필요한 구간임.

사업개요

- 기 간 : 2018. ~ 2021.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1-233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 420m, B= 10→15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도	2020년 이후
계	2,500	-	22	-	2,478
시 도 비	1,250	-	11	-	1,239
시군구비	1,250	-	11	-	1,239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7. 01. : 토지이동 신청
- 2017. 10. : 도로지정 동의여부 협의
- 2018. 11. : 지형현황 측량용역 시행
- 2019. 01. :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9. 04. : 실시계획인가 고시

향후계획

- 2019. 09. : 감정평가기관 의뢰
- 2019. 10. : 개별보상 협의
- 2021.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입찰공고, 공사착공 및 준공

사업명	부평3동 767-1번지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진호(☎509-679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주택밀집지역내 도로협소 등 통행불편 해소와 유사시 대형 사고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간임.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1.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3동 767-1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 420m, B= 8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도	2020년 이후
계	3,000	-	-	18	2,982
시 도 비	1,500	-	-	9	1,491
시군구비	1,500	-	-	9	1,491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8. 06. : 재정투자 심사 완료(적정)
- 2018. 12. : 본예산(1.5억) 확보
- 2019. 05. : 지형현황측량용역 시행

향후계획

- 2020. 03.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 보상 협의 및 보상 완료
- 2021. : 사업 착수 및 준공

사업명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진호(☎509-679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현재 도로개설중인 열우물 1길(소1-2호선)과 연계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간임.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1.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4-4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 667m, B= 8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도	2020년 이후
계	4,000	-	-	400	3,600
시 도 비	2,000	-	-	200	1,800
시군구비	2,000	-	-	200	1,80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8. 06. : 재정투자 심사 완료(적정)
- 2019. 04. : 2019년 1회 추경 1억 반영

향후계획

- 2020.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 보상 협의 및 보상 완료
- 2021. : 사업 착수 및 준공

사업명	십정동 소2-5호선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과 김진호(☎509-679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현재 도로개설중인 열우물 1길(소1-2호선)과 연계하여 차량통행 및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간임.

사업개요

- 기 간 : 2019. ~ 2021.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48-6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 454m, B= 8m)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도	2020년 이후
계	4,000	-	-	-	4,000
시 도 비	2,000	-	-	-	2,000
시군구비	2,000	-	-	-	2,00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8. 06. : 재정투자 심사 완료(적정)

향후계획

- 2020.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 보상 협의 및 보상 완료
- 2021. : 사업 착수 및 준공

사업명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자	주거환경정책과(現도시개발과) 조정희(☎509-692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비구역 해제지역 및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에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정주권 확보

사업개요

- 기간 : 2018년 ~ 2021년
- 위치 : 부평동 767-23번지 일원
- 규모 : 24,614m²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4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444		80	2,897	1,467
시도비	4,000		80	2,607	1,320
시군구비	444			290	147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5%)

- 2018. 3.26.: 시범사업 공모 선정
- 2018.10.22.: 정비계획수립용역 착수
- 2018.11.25.: 주민설명회
- 2019.11.~2019. 2.: “하하골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회의 12회
- 2019. 1.~2019. 2.: “마을계획 한마당” 6차
- 2019. 4.~2019. 8.: 하하골마을 문화배움교실 운영
- 2019. 5.29.: 선진지 견학
- 2019. 7. 6.: 하하골마을 축제 “웃어보자 하하골” 개최

향후계획

- 2019. 8.: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2019. 9.: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 착수

사업명	희망공원 조성	담당자	공원녹지과 이관우(☎509-8682)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희망공원 조성을 통한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기 간 : 1999년 ~ 2021년
- 위 치 : 부평구 부평동 산34-16번지 일원
- 규 모 : 73,926m²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2,000	4,644	1,150	2,500	4,856
국 비	800	0	0	0	800
시 비	4,153	300	0	1,500	2,353
시군구비	7,047	4,344	1,150	1,000	1,703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1986. 9. 2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고 1986-427호)
- 1994. 12. 9. :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인고 1994-221호)
- 1999. 6. 10. :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인고 1999-76호)
- 1999. 10. ~ 2004. 12. : 희망공원 조성공사(7,300m²)
- 2018. 6. ~ 8. : 제2차 인천시 투자사업 심사완료
- 2018. 10. 26. : 희망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 토지 보상(17,681.2m² : 24%), 공원 조성(7,300m² : 10%)

향후계획

- 2019. 6. : 공원조성계획(변경)
- 2019. 8. : 실시계획 인가
- 2019. 6. ~ 2021. 12. : 토지 등 보상 및 조성 추진
- ※ 2021년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확정(16억원)

사업명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	담당자	사회보장과 안재석(☎509-6492) 김현아(☎509-6495)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사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료 절감을 통해 사업 수익성을 제고하여 나아가 참여자의 이익 증대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 및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여 참여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0. ~ 2020. 4.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동로 6
- 규 모 : 대지 669㎡, 연면적 2,477㎡ / 지하1층 지상 5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2019년, 4,800백만원으로 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000	0	0	4,000	0
시군구비	4,000	0	0	4,00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7%)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2019. 3. 6.)
- 실시설계 계약 (2019. 6. 12.)
- 부동산 중도금 지급 (2019. 6. 27.)

□ 향후계획

- 부동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2019. 12.
- 공사 착공 - 2019. 12.
- 준공 및 부평구 자활센터 개관 - 2020. 4.

□ 사업변경 내역

- 사업비 증액(2018년 기준 4,000백만원 → 2019년 기준 4,800백만원)

사업명	맑은내공원 조성	담당자	공원녹지과 이경수(☎509-8683)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맑은내공원 조성을 통한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 ~ 2022년
- 위 치 : 부평구 청천동 68-17번지 일원
- 규 모 : 207,489m²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19,500	0	1,000	1,500	17,000
국 비	450	0	0	450	0
시군구비	19,050	0	1,000	1,050	17,00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5%)

- 2005. 12 ~ 2009. 7. : 인천생태숲 조성사업 추진(나비공원 명명)
- 2018. 6. 26. :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 2019. 1. ~ 5. : 청천동 산3-2등 5필지 보상완료(7,655m², 861백만원)

향후계획

- 2019. 6. ~ 12. : 실시계획 인가 용역 및 토지보상(2차) 추진
- 2019. 8. ~ 11. : 헬기장부지 GB 생활공원 조성(청천동 산3-2번지 일원)
생태계 보전 협력금 사업 시행(청천동 산6-8번지 일원)
- 2020. 1. ~ 12. : 청천동 산36-3번지 일원 조성 추진

사업명	부평2동 760-311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담당자	주차지도과 윤남식(☎509-6727) 박성훈(☎509-6728)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도심 노후주택 밀집지역 및 상업시설이 혼재된 곳으로 도로폭이 협소하고 부설주차장 부족
- 주차불편민원 해소 및 주변상권 활성화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0. 12.
- 위 치 : 부평동 760-31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1,352㎡, 주차면수 50면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000			45	3,955
시 도 비	2,000			23	1,977
시군구비	2,000			22	1,978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8. 6. :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2개소 결정
- 2018. 7. : 부평2동 주민설명회 개최(2회)
- 2019. 3. : 2019년 제1회추경 40억 예산확보(시비20억, 구비 20억)
- 2019. 7. : 실시설계용역 착수

향후계획

- 2020. 1.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0. 6. : 공사 착공
- 2020. 12. : 공사 준공

사업명	삼산해돋이 공영주차장 증축	담당자	주차지도과 윤남식(☎509-6727) 박성훈(☎509-6728)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 2020. 12.
- 위 치 : 삼산동 428-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1,433㎡, 주차면수 51면 증가(49면 → 100면)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2,600			81	2,519
시 도 비	1,300			41	1,259
시군구비	1,300			40	1,260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

- 2017. 2. : 2017년 새해방문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 2017. 11. : 인천시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 현장 방문
- 2019. 3. : 2019년 제1회추경 26억 예산확보(시비13억, 구비 13억)
- 2019. 7. : 실시설계용역 착수

향후계획

- 2020. 1. :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2020. 12. : 공사 준공

사업명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現체육진흥과) 강종훈(☎)509-6447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체계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부평 남부권(일신, 부개1, 부평2·3·6,십정동)에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부평동 663-30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8. 8월 ~ 2028. 12월 *시유지 토지매입비 분납(2019 ~ 2028)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층(대지면적 11,368㎡, 연면적 6,821.26㎡내외)
- 사업내용 : 수영장,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6,500백만원
 - * 보조율 :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토지매입비용 제외)
 - * 구비 : 토지매입비 16,200백만원 포함 (국유지 11,300, 시유지 4,900)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 행 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36,500	-	-	5,500	31,000
국 비	6,100	-	-	-	6,100
시 도 비	7,100	-	-	-	7,100
시군구비	23,300	-	-	5,500	17,80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2018. 8월 :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계획(안) 수립
- 2018.11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 2018.12월 :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통과

□ 향후계획

- 2019. 7월 : 설계공모 선정 및 설계용역 착수(2020. 2. 설계용역 완료)
- 2020. 3월 : 공사 착공(2022. 3. 준공)

10-2. 지방채 발행사업

☐ 우리 부평구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십정녹지 조성	48,388	12,100	400	18,754	17,134	13,600	94%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8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2018회계연도에 신규 발행한 지방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십정녹지 조성	담당자	공원녹지과 이희원(☎509-8684)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축 연결과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시경관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01년 ~ 2017년
- 위 치 : 부평구 갈산동 130-1번지 일원
- 규 모 : 72,471m²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8,3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48,388	43,684	4,704	0	0
지방채	12,100	12,100	0	0	0
국비	400	0	400	0	0
시도비	18,754	0	4,104	0	0
시군구비	17,134	0	20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4%)

- 1970. 2. 9.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건고 1970-54호)
- 1998. 6. ~ 2009. 6 : 십정녹지 1단계 ~ 3단계 조성완료(49,288m²)
- 2019. 6. : 십정녹지 4단계 조성공사 완료

□ 향후계획

- 2020. : 십정녹지(5단계) 조성공사 완료

10-3. 민간투자사업

☐ 우리 부평구에서 '18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BTL	부평문화예술회관 (부평아트센터)	(주)부평 씨앤에이	65,817	28,019	3,160	3,160	31,478	~'29. 12.17.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18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19년 이후는 추정액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부평문화예술회관(부평아트센터) 건립	담당자	문화체육과(現 문화관광과) 안병돈(☎509-6412)
-----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 사업개요

- 기간 : 공사기간 2007.10.18. ~ 2009.12.17.
운영기간 2009.12.18. ~ 2029.12.17.
- 위치 :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 민간사업자 : 부평씨엔에이 주식회사
- 총사업비 : 41,298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386㎡, 연면적 17,236.53㎡(지하2층/지상3층)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최소수익보장 내역, 기간 등)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계	65,817	28,019	3,160	3,160	31,478
국 비	2,000	800	100	100	1,000
시 도 비	31,708	13,530	1,520	1,520	15,138
시군구비	32,108	13,689	1,540	1,540	15,340

□ 추진단계

- 운영 중 ⇒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 향후계획

- 부평구에서는 부평구문화재단 연 1회 지도·감독 시행
- 부평구문화재단에서는 부평아트센터 운영



색 인

- 가용재원 (可用財源)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 결산 (決算)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공유재산 (公有財產)
-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率)
- 국고보조 (國庫補助)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 국세 (國稅)
- 금고 (金庫)
- 기금 (基金)
- 기본경비 (基本經費)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 목적세 (目的稅)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 보증채무부담행위 (保證債務負擔行爲)
- 보통세 (普通稅)
- 부담금 (負擔金)
- 부채 (負債)
- 불용액 (不用額)
- 비용 (費用)

- 사고이월 (事故移越)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 수익 (收益)
- 세계잉여금 (歲計剩餘金)
- 세외수입 (稅外收入)
- 세입 (歲入)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 세출 (歲出)
- 수의계약 (隨意契約)
- 순계예산 (純計豫算)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 예비비 (豫備費)
- 예산 (豫算, budget)
- 예산과목 (豫算科目)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 인건비 (人件費)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 이전수입 (移轉收入)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 일반회계 (一般會計)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 잉여금 (剩餘金)
- 자본지출 (資本支出)
- 자산 (資産)
- 자체수입 (自體收入)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 재정분석 (財政分析)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 재정진단 (財政診斷)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 중기재정계획 (中期財政計劃)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 지방세 (地方稅)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 채권 (債權)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 총계예산 (總計豫算)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 출연금 (出捐金)
- 출자금 (出資金)
- 최저윤임수입보장(MRG)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 특별회계 (特別會計)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 회계 (會計)
- 회계연도 (會計年度)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총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text{관리채무상환비율} = \frac{\text{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text{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times 100$$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 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이행책임 확정액의 잔액기준 ※ 이자 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세의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약)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

●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 당기순이익 (當期純利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 - Transfer - 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에 의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불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text{불용액} = \text{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text{당해연도 지출액} - \text{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 (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 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용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 잡종금 등)등이 있음

●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 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시·도비보조금 (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증진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 인건비(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 (豫算, 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예산대비 채무비율 = 지방채무 총규모 /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

●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 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 일시차입금 (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text{재정자립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

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教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구 분	산 출 방 법
시 · 도 시 · 군 ·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 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 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용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i) 지출원의 정산지출 ii)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iii)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 출연금 (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 출자금 (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 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직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각국의 회계연도

-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 3월~익년 2월말 : 터키
 -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